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07호 2019. 10. 7.(월)

공 고

-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(소로2-664호선) 준공인가 공고 ----- 2
- 목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----- 6
-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5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19-1376호

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(소로2-664호선) 준공인가 공고

전라남도 고시 제2009-43호(2009. 02. 05.)로 지정되고, 목포시 공고 제2017-478호(2017. 04. 27)로 준공인가 및 목포시 고시 제2018-122호(2018. 08. 30)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대양일반산업단지(소로2-664호선)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7일

목 포 시 장

1. 사업의 명칭

- 명 칭 :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(소로2-664호선)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

-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호
-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56번길 12-20(대양동)
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-1번지 일원
- 면 적 : 1,545,006.8㎡ (소로2-664호선 : 2,775.5㎡)

4. 준공인가연월일 : 2019년 10월 07일

5.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

가.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

1)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

구분	면 적(㎡)	비고
합계	51,191.5	-
지원시설용지(지원10, 11)	26,542.2	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해 분양
공공시설용지	24,649.3	-
도로(소로2-664)	2,775.5	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목포시에 무상귀속
공공청사(청사33, 33-1~3)	21,873.8	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해 분양

2)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

구 분	수 량	개소	연장 (m)	면적 (㎡)	관리처분
계	-	1	1,506	2,775.5	-
도 로	폭 8m	1	341	2,775.5	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(목포시)에 무상귀속
상수도	내충격수도관(D50 ~ D200mm) : L=507m	-	507	-	
하수도	우수(D450 ~ D600mm) : L=339m 오수(D150 ~ D300mm) : L=319m	-	658	-	

나. 시설물 이관 목록

1) 도로 및 부속시설물

구 분	시 설 현 황		비고
	시 설	규 모	
토목 분야	도로 및 부대시설	- 소로 1개노선 341m	
	하수시설	- 우수관 - 파형강관 339m - 오수관 - 고강성PVC이불벽관 319m	
	상수시설	- 상수관 - 내충격수도관 507m	
전기 분야	가로등	- 등주 : 15본, 가로등 제어반 1면	
교통 분야	교통안전 시설물	- 반사경 2EA - 차량등 철주 2본	

2) 시설물 이관 목록

가) 도시계획과(가로등)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가로등주	H=8.0m	본	15	
소 계			15	
가로등 제어반	옥외형	면	1	

나) 건 설 과(도로 및 포장공)

구 분	명 칭	세 부 사 항	비 고
소 로	소로 2류	1개노선 341m/폭 8m	
소 계		1개노선 341m	

(1) 주요자재 집계표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아스콘	#67	톤	298	
	#467	톤	598	
소 계		톤	896	

다) 교통행정과(신호등)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신호등주	H=8.0m	본	2	
소 계			2	
교통신호등	LED 4색	조	6	

라) 수 도 과 (상수공)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내충격수도관	D50mm	m	82	
	D80mm	m	23	
	D100mm	m	1	
	D150mm	m	400	
	D200mm	m	1	
소 계		m	507	

마) 하 수 과 (우수공)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파형강관	D450mm	m	63	
	D500mm	m	140	
	D600mm	m	136	
소 계		m	339	

바) 하 수 과 (오수공)

공 종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고강성PVC 이중벽관	D150mm	m	69	
	D300mm	m	250	
소 계		m	319	

6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- 목포시청(기업유치실 061-270-4242), 목포대양산업단(주) (사업팀 061-277-966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목포시 공고 제2019-1379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7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기금의 재원, 심의위원회의 기능,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기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운영·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조문수정 : 제1조(목적), 제3조(기금의 용도), 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, 제5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, 제11조(회계공무원), 제12조(기금운용 계획), 제13조(기금결산)
- 조문신설 : 제2조(기금의 재원), 제6조(위원장의 직무), 제7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,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, 제9조(위원의 해촉), 제10조(간사 및 수당), 제14조(기금의 존속기한), 제15조(관계 규정의 준용 등), 제16조(시행규칙)

3. 옥외발전기금조례 전부개정(안): 별도 첨부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」
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
 -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 - 제4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 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 -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6. 관련부서 의견

- 예산상황(기획예산과) : 일반회계 옥외광고 세외수입 중 일정액 전입 운용
-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의견없음
- 부패영향분석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7. 사전협의(승인)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8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※ 보내실 곳:[우530-701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건설과)]

9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설과(☎ 061-270-8643, FAX 270-80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목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

3.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6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7. 그 밖에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.

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며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,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,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, 기획예산담당 실·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.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2.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

3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 2.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- ② 위원회 심의·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제10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

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·보존
3.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
4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
2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운용 계획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목포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기금결산)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붙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및 「목포시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목포시 공고 제2019-1393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7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0조의 3)

3. 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5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사항)

6. 관련부서 의견
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사항 없음

7.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사항 없음

8. 예산상황 : 549,000천원(1830명*300천원)

9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9. 10. 7.(월) ~ 10. 28.(월) / 21일간

10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1. 기타 참고사항

○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

12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:[우530-701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자치행정과)]

13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 061-270-3428, FAX 270-87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·수정한다.

제10조의3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“제5항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준비행위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3 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그 밖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 한 사업	제10조의3 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6. ----- -----.

관계법령 및 참고사항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

1. 경비성격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

2. 기 준 액

-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2만원이내(1인당 평균)로 설정

3. 편성방법

- 해당 자치단체 ‘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‘18년과 동일하게 편성(인상불가)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
-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‘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(201-04)’ 내에서 통합운영(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